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김중덕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장
(kim.jd@kiep.go.kr, Tel: 044-414-1181)
- 이주미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jmlee@kiep.go.kr, Tel: 044-414-1052)

차 례 ●●●

1. 한·중 FTA 서비스분야 주요 협상 결과
2.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분야 교역 현황과 경쟁력 비교
3.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분석
4. 후속협상을 위한 향후 과제

주요 내용 ●●●

- ▶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된 한·중 FTA는 미국 EU와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에 대해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서비스 교역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서비스시장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음.
 - 한·중 FTA는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 개방을 우선 규정하고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처음으로 통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등 추가적인 개방 기회를 마련함.
- ▶ 한·중 FTA 서비스분야 양허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 양측은 전반적으로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외하고 기존 DDA나 양자 FTA를 통해 개방한 분야 이외의 시장접근 개선은 없었으나 이미 개방된 분야의 수준이 일부 개선됨.
- ▶ 한중 FTA를 통해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서비스와 같은 중국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지재권 분야는 중국과의 교류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주요 분야로, 특히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미흡한 분야인 일부 사업, 유통,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임.

1. 한·중 FTA 서비스분야 주요 협상 결과

■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의 통상장관에 의해 한·중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었음.

- 이는 2012년 5월 14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를 위한 1단계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3년이 지난 2015년 2월 25일 가서명 이후 약 3개월 만의 일임.
- 한·중 양측은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에도 4번의 기술협의, 3번의 법률검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2월에야 최종협의를 마무리함.
- 한·중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2015년 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중 FTA 협상에서 서비스분야는 자유화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나 한·중 양국은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 개방을 우선 규정하고 이후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¹⁾ 또한 중국 최초로 금융 및 통신 분야 관련 독립된 장(chapter)을 구성하는 데도 합의함.

- 중국은 자국의 관련 법·제도 등을 제·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한 후속협상을 하기로 합의²⁾
 - 한·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의 FTA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통신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
- 한·중 FTA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통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를 독립된 별도 장(chapter)으로 구성해 규범을 강화함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
-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같은 중국 유망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1. 한·중 FTA 주요 협상 경과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1단계 협상	1차	2012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위한 1단계 협상 개시 •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 방식, 분야별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 등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확정 •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2012년 7월 3~5일 한국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품목군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을 개최하여 양국의 제도 및 현황 파악과 서비스·투자 분야 모델리티 포함 요소에 대해 논의

1) 포지티브 방식은 양허상 적시한 분야만을 개방하는 자유화방식인 데 반해,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을 유보하지 않은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자유화방식을 지칭함.

2)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하기로 합의함.

표 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일시 및 장소	
1단계 협상	3차	2012년 8월 22~24일 중국 웨이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상품의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를 통해 양국의 기체결 FTA에 대한 정보교환 및 모델리티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
	4차	2012년 10월 30일~ 11월 1일 한국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품목군 구분 및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 논의,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개시 • 서비스·투자 분야, 금융, 통신, 일시입국, 항공운송, 건설 서비스 등 분야 별 의견 교환
	5차	2013년 4월 26~28일 중국 하얼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추진 의지 재확인 • 상품 분야, 기존 논의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 논의 • 서비스·투자 분야, 모델리티의 기본구조 및 서비스·투자 분야 포함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6차	2013년 7월 2~4일 한국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과 범위 등 기본사항에 대한 상당한 진전 - 이견이 있어온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등을 협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
	7차	2013년 9월 3~5일 중국 웨이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리티에 합의하여 1단계 협상이 마무리 - 상품 분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하는 품목군 분류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 - 서비스·투자 분야,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협정문 구성요소에 대해 합의
	8차	2013년 11월 18~22일 한국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 동시에 진행 •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한 논의 지속 및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포함한 양측의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
	9차	2014년 1월 6~10일 중국 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양허수준 논의 •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2단계 협상	10차	2014년 3월 17~21일 한국 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양허수준 지속 논의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제조업 관련 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 지속 •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관련 입장차 지속
	11차	2014년 5월 26~30일 중국 쓰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2013년 12월 1차 양허안(offer) 교환 이후 개선된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 서비스·투자 분야, 1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 교환하며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개시
	12차	2014년 7월 14~18일 한국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제조업 및 농수산물 관련 양측의 의견차 좁히기 위한 협상 진행 •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 - 협정 발효 시 협정문과 양허로 구성되는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를 채택하되, 후속협상을 통해 협정문과 유보로 구성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양허방식 전환에 합의
	13차	2014년 9월 22~26일 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분야, 상품 협상 최종 타결 목표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안)를 교환 • 서비스·투자 분야, 2차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여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3개 분야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설치하기로 합의
	14차	2014년 11월 6일 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분야 잔여 쟁점 집중 논의를 통해 2단계 협상 마무리
		2014년 11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가서명 완료 	
	2015년 6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본서명 	

자료: 한·중 FTA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2014. 11) 및 보도자료(2014. 11. 10)를 참고로 저자 작성.

■ 한·중 FTA 서비스분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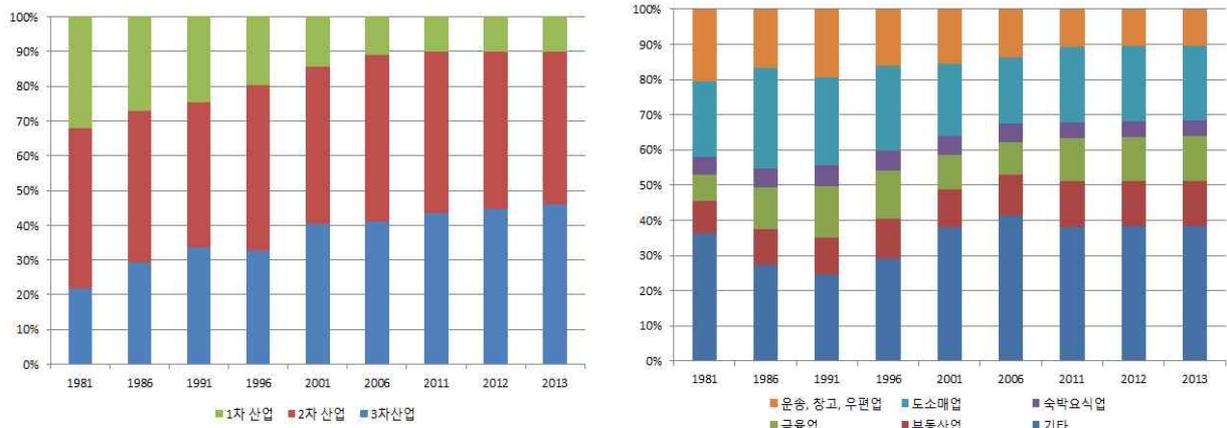
- 한·중 FTA는 총 22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8장이 서비스무역에 대한 내용으로 총 16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정의(제8.1조), 적용범위(제8.2조), 시장접근(제8.3조), 내국민대우(제8.4조), 추가약속(제8.5조),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제8.6조), 국내규제(제8.7조), 투명성(제8.8조), 인정(제8.9조), 지불 및 송금(제8.10조), 혜택의 부인(제8.11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제공자(제8.12조), 보조금(제8.13조), 서비스무역위원회(제8.14조), 영업관행(제8.15조), 접촉선(제8.16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관련 부속서로는 한국과 중국의 양허표(부속서 8-가), 영화 공동제작(부속서 8-나), 방송용 TV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공동제작(부속서 8-다)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서비스(제9장) 및 통신서비스(제10장)는 별도의 독립된 장에서 다루고 있음.
- 협정문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해당되나 정부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국내 연안해상운송, 항공운송서비스, 양허상 개방이 적시되지 않은 금융서비스,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됨.

■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체결한 FTA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중국이 그동안 맺은 기체결 FTA 중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FTA로서 그 의의가 있음. 여기서는 한·중 FTA 협정문·양허표 및 양국의 기체결 FTA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협상의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함.

2.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분야 교역 현황과 경쟁력 비교

-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 서비스시장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
- 중국의 서비스산업(3차 산업)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 46.1%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창고·우편 서비스는 산업 내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는 산업 내 비중이 증가하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도소매업은 기타서비스를 제외하고 서비스업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임.

그림 1. 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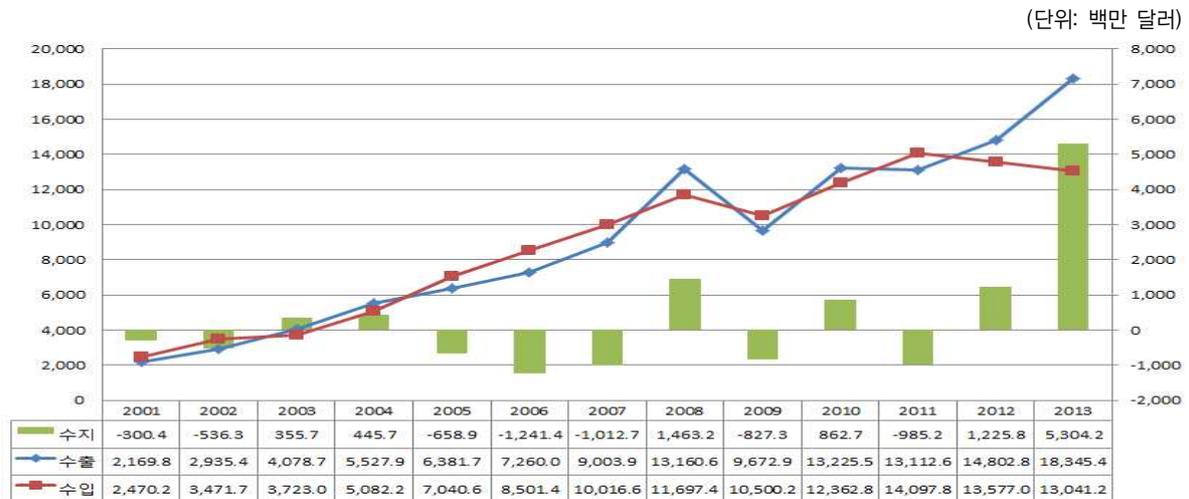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14), <http://www.stats.gov.cn/english>(검색일: 2015. 4. 10).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2001년부터 2013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대중 수출은 183억 4,54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대중 수입은 130억 4,120만 달러에 달함.

- 한국은 대부분 서비스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가공, 기타 사업, 정부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는 적자를 기록
- 한국은 운송서비스와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음.
- 여행서비스의 경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됨.

그림 2.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교역 현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5. 4. 6).

■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분야 수출입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³⁾ 서비스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⁴⁾ 양국간 시장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etitive Advantage)⁵⁾를 활용⁶⁾

- 한국과 중국은 현시비교우위지수상,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으나, 양국의 무역특화지수 및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함께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운송,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는 가공, 기타 사업서비스⁷⁾ 등으로 나타났음.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양자간 서비스무역특화지수(TSI) 및 시장비교우위지수(MCA) 상 한국은 공통적으로 운송서비스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운송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나 중국과의 양국간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적극적 공세 분야일 수 있음.
- 한국의 지식재산권사용료, 여행서비스분야는 현시비교우위지수상 비교우위는 약하나, 한·중 양자간 무역특화지수 및 시장비교우위지수에서 대중 비교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사용료의 경우 한국은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분석기간 동안 2.0~2.22의 높은 시장비교우위지수와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으면서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중국의 개방 수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행서비스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업종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중국에서 한국 여행서비스에 대한 특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중국의 개방수위를 높이는 데 주력하되 중국의 한국 여행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
- 반면 한국의 수입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공, 기타 사업서비스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서도 중국에 비교열위를 보이는 분야로 해당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공서비스는 대중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분야로 분석기간 동안 시장비교우위지수가 0.55에서 0.32로 하락하였으나 수입특화 양상은 지속됨.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및 보험서비스의 경우,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의 한국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되는바, 향후 후속협상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임.

-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해당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특정품목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지수로 RCA 값이 1보다 크면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함.
- 4) 무역특화지수(TSI)는 수출에 있어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품목의 수출입 총액으로 나눈 값임.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5) 시장비교우위지수(MCA)는 특정품목의 수출에서 해당국가와 상대국가 간 수출비중을 해당국가의 총 수출비중과 비교하는 지수로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특정품목이 상대국가의 같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함.

$$MCA_{ij}^k = \frac{X_{ij}^k / X_{ij}^i}{X_{iw}^k / X_{iw}^i}, \quad MCA_{ij}^k \text{는 } i \text{ 국가 } k \text{ 품목에 대한 } j \text{ 국가가 시장비교우위지수로, } X_{ij}^k \text{는 } i \text{ 국가 } k \text{ 품목에}$$

대한 j 국가로의 수출액, X_{ij}^i 는 i 국가의 j 국가로의 수출액, X_{iw}^k 는 i 국가 k 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iw}^i 는 i 국가 대세계 수출액임.

- 6) 현재 제시된 경쟁력지수는 데이터의 한계로 분야가 자세하지 않음. 특히 협상에서는 산업별 경쟁력 이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실제 협상에 구체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7) IMF의 BPM6(Balance of Payment Manual 6)에 따르면, 가공서비스는 제품의 공정·조립·라벨링·포장 등의 서비스를 지칭하며, 기타 사업서비스는 R&D, 전문직, 경영컨설팅, 기술무역 관련, 폐기물처리, 오염제거, 농업·광업 관련, 임대 서비스 등을 의미함.

- 중국의 IT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배치 및 지원과 같은 단순 업무에서 IT 훈련 및 교육, 소프트웨어 설치 및 지원과 같은 고부가가치업무로 재편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⁸⁾

표 2.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및 한·중 현시비교우위지수(RCA)

	2012				2013				한국의 비교우위	
	TSI	MCA	RCA(한)	RCA(중)	TSI	MCA	RCA(한)	RCA(중)	대중	대세계
가공서비스	-0.94	0.55	1.50	10.94	-0.94	0.32	1.90	9.45	비교열위	비교우위
운송서비스	0.51	1.37	2.47	1.11	0.45	1.22	2.33	1.12	비교우위	비교우위
여행서비스	0.22	1.77	0.63	1.13	0.47	2.22	0.70	1.19	비교우위	비교열위
보험서비스	0.48	0.56	0.23	0.76	0.13	0.25	0.32	0.96	불명확	비교열위
지식재산권 사용료	0.98	2.22	0.75	0.10	0.98	2.00	0.83	0.08	비교우위	비교열위
통신컴퓨터 ·정보서비스	0.12	0.79	0.19	1.00	0.78	1.51	0.27	1.02	비교우위	비교열위
기타 사업서비스	-0.28	0.45	0.86	1.30	-0.01	0.53	0.94	1.46	비교열위	비교열위

주: 중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의 대중 무역특화지수의 반대 부호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5. 4. 6); IMF Balance of Payment, [http://elibrary-data.imf.org/Data Explorer.aspx](http://elibrary-data.imf.org/DataExplorer.aspx)(검색일: 2015. 4. 6).

3.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분석

-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분석을 위해 한·중 FTA 협정문과 양국의 양허표를 한국의 경우 한국의 DDA 수정양허안 그리고 한·ASEAN FTA와, 중국의 경우 DDA 수정양허안, 중국·뉴질랜드 FTA, 그리고 중국·스위스 FTA와 비교 분석⁹⁾
 - 중국의 경우 W/120 기준¹⁰⁾ 총 155개 서비스업종 중 1개 분야 시장접근 개방과 16개 분야에서 양허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한·중 FTA는 2008년 발효된 중국·뉴질랜드 FTA(이하 중·뉴질랜드 FTA)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로 나타났으며, 2013년 서명한 중국·스위스 FTA(이하 중·스위스 FTA)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업종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경우 W/120 기준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20개 분야에서 양허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한·중 FTA는 한국이 기체결한 FTA 중 한·미 FTA와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이지만, 2009년

8) 박정수 외(2014),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9) 중국은 WTO 출범 이후인 2001년 WTO에 가입하여 UR 양허는 없고 가입 협상 시 제출한 양허가 있으며,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TN/S/O/CHN/Rev.1)을 기준으로 분석함. 한국도 2005년 제출한 수정양허안(TN/S/O/KOR/Rev.1)을 기준으로 분석함.

10) 서비스분야 및 업종 분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은 없으나 UR 서비스 협상 당시 이용한 UN의 중심상품분류체계(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상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서비스분야 양허를 하는 경향이 큼. UN의 중심상품분류체계에 기초한 서비스 분류체계는 크게 총 12개 부문(sector)으로 총 155개의 업종(subsector)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양허를 분석함(김종덕 외(2014),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비스 협정이 발효된 한·ASEAN FTA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동일한 업종이라도 국가별로 세부업종을 다르게 두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허 업종의 개수가 아니라 개방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방 업종 수로 개방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름.

가. 한·중 FTA 서비스분야 중국 측 개방 수준 분석

■ 한·중 FTA에서 중국은 전반적으로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DDA 수정양허안에서 완전 개방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완전 개방하였음.
 - 완전 개방한 업종은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부수서비스, 금융 정보제공교환/금융자료처리 서비스임.
- DDA 수정양허안에서 개방하지 않았으나 한·중 FTA에서 새롭게 개방한 부문은 엔터테인먼트서비스로 나타남.
- 제한을 두고 양허한 총 84개 업종 중 제한 사항이 개선된 부문은 16개로 나타남.

표 3.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및 한·중 FTA 양허 업종 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완전 개방한 업종	6	6		
제한적으로 개방한 업종	83	84	미개방 ▶ 제한적 개방	1
			제한 사항 개선	16
			제한 사항 강화	8
			제한 사항 그대로 유지	59
미개방한 업종	66	65		
총 업종 수	155	155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1) 양허 개선 분야

■ 한·중 FTA 양허 업종 중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이 높은 업종은 법률, 건설, 소매, 일부 환경, 일부 금융, 일부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등으로 W/120 기준 155개 서비스 업종 중 총 17개 분야에 해당함.

- 양허 개선 방식의 네 가지 유형 중 미개방 또는 제한적 개방 상태에서 완전 개방한 분야는 없었음.
- 미개방에서 일부 제한을 두고 개방한 부문은 1개 분야로 나타났으며, 제한을 두고 양허한 분야에서 제한 사항이 개선된 부문은 16개 분야로 가장 많았음.

표 4. 중국의 양허 개선 분야

양허 변화	세부 분야
① 미개방 ▶ 완전 개방	- 없음.
② 미개방 ▶ 제한적 개방	- 엔터테인먼트서비스
③ 제한적 개방 ▶ 완전 개방	- 없음.
④ 제한적 개방 ▶ 제한적 개방 (제한 사항 개선)	- 법률서비스 - 건설서비스(총 5개 분야) - 소매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 폐기물처리 서비스 - 위생 및 유사 서비스 - 보험/보험관련 서비스(총 4개 분야) - 증권서비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 DDA 수정양허안에서는 양허하지 않았으나 제한을 두고 개방한 분야는 엔터테인먼트서비스임(표 4의 양허 변화 유형 ②).

-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한국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서비스분야를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함.
-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DDA 수정양허안에서는 양허하지 않았으나 한·중 FTA에서 개방한 업종으로, 공연중개기관이나 공연장법인회사를 합작투자회사나 합영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게 됨. 다만 외국인 지분율은 49% 이하로 합영회사의 경우 중국 측이 의사결정권을 보유
- 공연중개기관은 상업적 공연 참여가 가능하며, 공연장법인회사는 상업적 공연 개최가 가능
-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스위스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분야
- 최근 중국 내 한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시장개방에 따른 양국간 경제적 이익도 커질 것으로 예상

표 4-1. 중국의 양허 개선 세부 분야

대분류	소분류	한·중 FTA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엔터테인먼트서비스	DDA+	DDA	DDA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 DDA 수정양허안에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으나 한·중 FTA를 통해 제한 사항이 완화된 분야는 법률, 건설, 소매,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보험/보험관련, 증권,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서비스로 분석됨(표 4의 양허 변화 유형 ④).

- 법률서비스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에서 한국 로펌의 대표사무소는 공동운영(joint operation) 형태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중국 로펌과 외국법 자문사 교환 가능

- 중·뉴질랜드 FTA 및 중·스위스 FTA 보다 한·중 FTA 개방 수준이 높음.

- 건설서비스

- DDA 수정양허안에서는 네 가지 특정 프로젝트¹¹⁾에 한해서만 외국인 100% 지분을 허용하였으나, 한·중 FTA에서는 이 네 가지 프로젝트 이외에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중외합작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의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요건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지역구에서 중외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의 상하이 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외국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 시 중국 내의 건설 실적만 인정하여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우리 건설기업의 실적도 인정하기로 합의함. 이에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국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던 면허 관련 문제가 해소되어 한국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면허등급에도 불구하고 참여 가능한 영역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역 이외에도 제한 완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DDA 수준과 같은 중·뉴질랜드 FTA 및 중·스위스 FTA 보다 한·중 FTA 개방 수준이 높음.

- 소매서비스

- DDA에서 외국인 다수지분을 불허하는 체인점 품목을 지정하였는데, DDA에 포함되어 있던 책이 제외되어 한국 유통기업의 책 판매가 가능해짐.
- 중·스위스 FTA 보다 개방 수준이 높으나, 중·뉴질랜드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음.

-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 DDA에서는 외국인 다수지분의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한·중 FTA를 통해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었음.
- 중·뉴질랜드 FTA 및 중·스위스 FTA도 동일한 내용으로 양허함.

- 보험/보험관련 서비스

- DDA에서 보험회사만 국내지점 설립을 허용하였는데, 한·중 FTA에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업의 중국 내 지점 설립을 허용함.
- 중·뉴질랜드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으며, 중·스위스 FTA와 동일한 내용임.

- 증권서비스

- 외국 증권사는 B주 시장¹²⁾에 직접 참여 가능하나 한국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의 관련 법과 규제를 충족하는 경우 중국 적격국내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DDA에서 외국증권사의 외국인지분율을 1/3로 제한하였으나, 한·중 FTA에서는 지분율 상한을 49%로 완화
-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합작증권회사의 경우 중개업, 자기자본거래, 자산관리 운영을 점진적으로 허용
- 중·뉴질랜드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으며, 중·스위스 FTA와 동일한 내용

11) ① 전액 외자 투자된 프로젝트 ②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프로젝트 ③ 외자 50% 이상인 중외합작프로젝트나 외자 50% 미만이지만 기술적 한계로 중국기업이 단독으로 수주할 수 없는 프로젝트 ④ 중국 프로젝트이나 기술적 한계로 중국기업이 단독으로 수주할 수 없는 프로젝트.

12) 중국 내 상장되어 중국 B주 시장에서 외환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함.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DDA에서 규정하던 경제수요심사 기준 등 기존 제한을 철폐함.
- 중·뉴질랜드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으며, 중·스위스에서 개방한 기타 스포츠서비스(CPC 96419)를 한·중 FTA에서는 양허하지 않음.

표 4-2. 중국의 양허 개선 세부 분야

대분류	소분류	한·중 FTA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
사업	법률서비스	DDA+	DDA	DDA
건설	건설서비스	DDA+	DDA	DDA
유통	소매서비스	DDA+	DDA+ / ▶한·중+	DDA
환경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 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DDA+	DDA+ / ▶한·중 동일	DDA+ / ▶한·중 동일
금융	보험/보험관련 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동일
	증권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동일
레크리에이션 / 문화/스포츠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2) 양허 후퇴 분야

■ 한·중 FTA 양허 업종 중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이 낮은 업종은 기타 환경, 은행/기타금융, 항공운송 서비스로 W/120 기준 155개 서비스 업종 중 총 8개 분야에 해당함.

- 양허 후퇴 방식의 네 가지 유형 중 제한적 개방 상태에서 제한 사항이 강화된 분야만 존재함.

표 5. 중국의 양허 후퇴 분야

양허 변화	분야
① 완전 개방 ▶ 미개방	- 없음
② 완전 개방 ▶ 제한적 개방	- 없음
③ 제한적 개방 ▶ 미개방	- 없음
④ 제한적 개방 ▶ 제한적 개방 (제한 사항 강화)	- 기타 환경서비스 - 은행/기타금융 서비스(총 6개 분야) - 항공운송서비스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 DDA와 비교,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으나 제한 사항이 강화된 분야는 일부 환경, 금융, 운송 서비스로 분석됨 (표 5의 양허 변화 유형 ④).

- 기타 환경서비스

- 자연보존지역 및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건설과 운영은 제외됨. 양허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실상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임.

-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방지 서비스만 외국인 100% 지분을 허용하였으며, 자연·경관 보호 및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는 외국인 다수지분의 합작 투자가 가능
-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모든 기타 환경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100% 지분을 허용하였으나, 중·스위스 FTA에서는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방지 업종만 외국인 100% 지분을 허용함.

- 은행/기타 금융서비스

- DDA 수정양허안에 따르면 중국 내 중외합작은행(Chinese-foreign joint bank) 또는 중외합작금융회사(Chinese-foreign joint finance company)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한·중 FTA의 경우 중외합작금융회사설립이 제외됨.
- 중·스위스 FTA와 동일한 내용이나, 중외합작은행과 중외합작금융회사 모두를 허용한 중·뉴질랜드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음.

- 항공운송서비스

- 컴퓨터예약시스템(CRS)의 경우, 외국 CRS 서비스공급자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나 합작 가능한 회사를 중국 CRS 공급자로 한정함.
- DDA 수준인 중·뉴질랜드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음. 중·스위스 FTA에서는 한·중 FTA에서 제한을 두고 양허한 외국 CRS 서비스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지 않아 한·중 FTA 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 중국의 양허 후퇴 세부 분야

대분류	소분류	한·중 FTA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
환경	기타 환경서비스	DDA-	DDA+ / ▶한·중+	DDA+ / ▶한·중+
금융	은행/기타 금융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동일
운송	항공운송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나. 한·중 FTA 서비스분야 한국 측 개방 수준 분석

■ 한·중 FTA에서 한국은 DDA 수정양허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DDA 수정양허안에서 완전 개방한 업종과 동일한 39개 업종을 완전 개방하였음.
- DDA 수정양허안에서와 같이 49개 업종을 미개방하였음.
- 제한을 두고 양허한 총 67개 업종 중 제한 사항이 개선된 부문은 20개로 나타났으며, 제한 사항이 강화된 부문은 6개로 나타남.
- 기본통신서비스(총 8개 업종)는 제한 사항이 변경된 부문으로 제한 사항이 완화 및 강화됨.

표 6. 한국의 DDA 수정양허안 및 한·중 FTA 양허 업종 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완전 개방한 업종	39	39		
제한적으로 개방한 업종	67	67	제한 사항 개선	20
			제한 사항 강화	6
			제한 사항 내용 변경	8
			제한 사항 그대로 유지	33
미개방	49	49		
총 업종 수	155	155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1) 양허 개선 분야

■ 한·중 FTA 양허안은 한국의 DDA 수정양허안에 비해 일부 제한사항이 완화되었음.

- 양허 개선방식의 네 가지 유형 중 기존 제한 사항이 개선된 방식만 있으며 이외의 양허 개선 방식은 없었음.

표 7. 한국의 양허 개선 분야

양허 변화	세부 분야
① 미개방 ▶ 완전 개방	- 없음.
② 미개방 ▶ 제한적 개방	- 없음.
③ 제한적 개방 ▶ 완전 개방	- 없음.
④ 제한적 개방 ▶ 제한적 개방 (제한 사항 개선)	- 쿠파서비스 - 건설서비스(총 5개 분야) - 보험/보험관련 서비스(총 4개 분야) - 은행/기타금융 서비스(총 10개 분야)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 DDA 수정양허안보다 제한 사항이 완화된 분야는 쿠파, 건설, 보험/보험관련, 은행/기타금융 서비스 등 총 20개 분야임(표 7의 양허 변화 유형 ④).

- 쿠파서비스

- 특급배달서비스를 포함한 쿠파서비스로 양허 업종 영역이 확대됨.
-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트럭운영 면허 제공이 가능해짐.
- DDA 수정양허안 수준인 한·ASEAN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음.

- 건설서비스

- DDA 수정양허안에 있던 의무하도급제가 한·중 FTA에서는 철폐되었음.
- 한·ASEAN FTA도 동일한 내용으로 양허함.

- 보험/보험관련 서비스

- 생명/상해/건강 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재해보험의 경우, 한국 보험사와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불가하며, 보험

전문인력의 모집 및 채용이 제한됨. 임원의 국내 거주 요건을 삭제함.

- 보험부가서비스의 경우, 임원의 국내 거주 요건을 삭제함.
- DDA 수정양허안 수준인 한·ASEAN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음.

- 은행/기타금융 서비스

- 예금, 대출, 금융리스, 지급/송금, 보증/약정, 외환서비스, 금융자산 결제/정산의 경우, 임원의 국내 거주 요건 삭제
- 외환업무의 경우 대표사무소 설립 시 사전 통보해야 하며, 임원의 국내 거주 요건 삭제
- 증권발행, 자문/기타 금융부수 서비스의 경우, 임원의 국내 거주 요건 삭제
- 자산관리의 경우, 임원의 국내 거주 요건 삭제
- DDA 수정양허안 수준인 한·ASEAN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음.

표 7-1. 한국의 양허 개선 세부 분야

대분류	소분류	한·중 FTA	한·ASEAN FTA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쿠리어서비스	DDA+	DDA
건설	건설서비스	DDA+	DDA+ / ▶한·중 동일
금융	보험/보험관련 서비스	DDA+	DDA
	은행/기타금융 서비스	DDA+	DDA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2) 양허 후퇴 분야

■ 한·중 FTA 양허 업종 중 한국의 DDA 수정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이 낮은 업종은 수의학, 자연과학 R&D, 도매, 소매, 고등교육, 성인교육 서비스로 W/120 기준 155개 서비스 업종 중 총 6개 분야임.

- 양허 후퇴 방식의 네 가지 유형 중 제한적 개방 상태에서 제한 사항이 강화된 방식만 있으며, 이외의 양허 후퇴 방식은 없음.

표 8. 한국의 양허 후퇴 분야

양허 변화	세부 분야
① 완전 개방 ▶ 미개방	- 없음.
② 완전 개방 ▶ 제한적 개방	- 없음.
③ 제한적 개방 ▶ 미개방	- 없음.
④ 제한적 개방 ▶ 제한적 개방 (제한 사항 강화)	- 수의학서비스 - 자연과학 R&D서비스 - 도매서비스 - 소매서비스 - 고등교육서비스 - 성인교육서비스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으나 제한 사항이 강화된 분야는 수의학, 자연과학 R&D, 도소매, 고등교육, 성인교육 서비스로 분석됨(표 8의 양허 변화 유형 ④).

- 수의학서비스

- DDA에서 상업적 주재에 대해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나, 한·중 FTA에서는 상업적 주재를 양허하지 않음.

- 자연과학 R&D서비스

- 해양과학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의 사전허가나 동의를 필요하다는 요건이 추가됨.
- 한·ASEAN FTA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양허 업종에서 제외함.

- 도매서비스

- 주류의 도매는 당국의 허가 취득 필요
- 지정된 한약재 도매의 공급이 보건복지부 통제를 받는다는 요건이 추가됨.

- 소매서비스

-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가 금지됨.
- 안경사 자격이 있는 자연인만이 검안서비스 제공과 사무실 운영이 가능함.
- 제약품 소매공급자는 하나 이상의 약국이나 법인의 설립이 불가함.

- 고등교육서비스

- 양허가 제외되는 분야에 법학전문 교육, 방송통신대, 사이버대가 추가되었음.
- 학생 수를 제한하는 분야를 의학, 약리학, 수의학, 한의학 등으로 정확히 명시함.
- 한·ASEAN FTA의 경우 양허가 제외되는 분야에 법학전문 교육이 추가되었으나(DDA-), 학점 인정에 대한 제한 내용이 삭제됨(DDA+).

- 성인교육서비스

-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학사 학위 소지 및 한국 거주 의무 요건이 명시됨.
- 한·ASEAN FTA의 경우 DDA 수정양허안 및 한·중 FTA 교육감의 교육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제한이 삭제됨.

표 8-1. 한국의 양허 후퇴 세부 분야

대분류	소분류	한·중 FTA	한·ASEAN FTA
사업	수의학	DDA-	DDA
	자연과학 R&D	DDA-	DDA- / ▶한·중-
유통	도매	DDA-	DDA
	소매	DDA-	DDA
교육	고등교육	DDA-	DDA-/+

	성인교육	DDA-	DDA+ / ▶한·중+
--	------	------	--------------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3) 제한 사항 변경

■ 한·중 FTA 양허 업종 중 한국의 DDA 수정양허안과 비교했을 때 제한 사항이 변경되어 개선 및 후퇴된 분야는 기본통신서비스로 총 8개 분야¹³⁾임.

- 기본통신서비스의 개방 업종(IAS, VoIP)이 추가되어 양허가 개선됨.
- 무선국 허가증 취득이 불허되었으며, KT 외국인 대주주 금지요건이 추가되어 양허가 후퇴함.
- 한·ASEAN FTA도 동일한 내용으로 양허함.

4. 후속협상을 위한 향후 과제

■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외하고 기존 DDA나 양자 FTA를 통해 이미 개방한 분야 이외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미 개방된 분야에서 개방 수준 개선은 있었음.

- 향후 예정된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이번 한·중 FTA 서비스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운송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협상에서 이 분야의 추가개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마련이 필요

■ 중국이 기체결한 FTA에 비해 한·중 FTA의 양허수준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후속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

- 한·중 FTA 서비스 양허 가운데 중·뉴질랜드 FTA 및 중·스위스 FTA와 비교했을 때 양허수준이 낮은 분야로 일부 사업, 유통, 운송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 자연과학개발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에서 양허하지 않았으나 중·스위스 FTA에서는 외국인 다수 지분을 허용하여 양허하였음.
 - 기타 사업서비스 경우, 한·중 FTA에서 양허하지 않은 광업관련서비스를 중·스위스 FTA에서는 중국 파트너와 협력 가능하도록 양허함.
 - 소매서비스의 경우, DDA 수정양허안의 체인점 외국인 다수 지분 불허 품목 중 한·중 FTA에서는 책만 제외되었으나,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책, 신문, 잡지, 제약품, 살충제, 제조필름, 가공유, 화학비료가 제외됨.
 -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에서 양허하지 않은 지상조업서비스를 중·스위스 FTA에서는 양허함.

13) 8개 분야는 음성전화, 팩킷데이터전송, 회선데이터전송,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전용회선, 기타 통신 서비스임.

- 도로운송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에서 양허하지 않은 도로운송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양허함.
- 운송지원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외국인다수지분만 허용한 통관서비스를 중·스위스 FTA에서는 제한 없이 양허함.

표 9. 추후협상 시 추가 개방 요구 분야(중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

대분류	소분류	한·중 FTA	중·뉴질랜드 FTA	중·스위스 FTA
사업	자연과학개발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기타 사업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유통	소매서비스	DDA+	DDA+ / ▶한·중+	DDA
운송	항공운송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도로운송서비스	DDA	DDA+ / ▶한·중+	DDA-
	운송지원서비스	DDA	DDA	DDA+ / ▶한·중+

자료: 한국 및 중국의 DDA 수정양허안,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로 저자 작성.

■ 지재권 분야는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주요 분야로, 특히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 및 상호협력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한·중 FTA 지재권 분야의 내용은 WTO TRIPS를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조항을 도입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중국 내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강화되었음(협정문 제 15.6조).
- 한·중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경우, 한·중 FTA를 통해 새롭게 개방된 업종으로 이를 통해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중국 문화부는 2012년 ‘12·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는데, 11가지 중점산업¹⁴⁾에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됨.
- 2015년 수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¹⁵⁾에 따르면 문화, 체육, 오락업의 공연 장소 경영, 경기 공연 및 스포츠 훈련과 중계 서비스가 장려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는 지분통제하에 외상투자가 제한된 업종목록에 포함됨.
- 공연중개기관이나 공연장법인회사를 합작투자회사나 합영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문화공연 장소 경영을 장려하는 만큼 후속협상을 통해 투자제한 및 외자기업의 지분제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 부문의 경우 영화 공동제작, TV 드라마·다큐멘터리·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부속서 마련을

14) 11가지 중점산업은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여행, 예술품, 공예미술, 문화전시, 디자인, 인터넷 문화, 디지털문화서비스업.

15)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 분야를 장려·제한·금지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투자제한이나 지분제한은 중국의 대표적 진입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음.

통해 중국의 문화콘텐츠 내수시장 진출의 제도적 기반과 시장진입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한·중 공동으로 제작된 영화는 외화에 적용되던 쿼터제한을 받지 않아 추후 국내제작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산 콘텐츠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공동제작 부속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여행서비스의 경우 기존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대상 해외여행업이 한·중 FTA를 통해 한국기업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약속한 만큼 양국의 여행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촬영현장 방문 이외에 쇼핑, 스키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임.
- 2014년 약 6백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1.6% 증가한 것임.¹⁶⁾
- 한국관광은 쇼핑 위주라 한국 여행에 외국인 유인하는 요소가 부족하고 저가상품으로 인한 한국의 패키지 상품의 질 악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함. KIEP

16) 한국관광공사(2015), 『관광시장동향』, 2월, 한국관광공사.